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8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사업
장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행정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사용 및 구청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주소: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2-3396-5485
팩스: 02-3396-8754, email: 20160111811@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 일시와 장소를 지정 운영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를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 일시와 장소를 지정 운영하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호 중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종량제봉투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반투명), 사업장폐기물용은 옅은 녹색으로 하고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한다.”를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종량제봉투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반투명),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2(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제5조 관련)

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3ℓ	90	5	90	8
3ℓ(재)	90	5	90	8
5ℓ	130	8	130	12
10ℓ(재)	250	15	250	23
20ℓ	490	29	490	44
20ℓ(재)	490	29	490	44
30ℓ	740	44	740	67
50ℓ	1,250	75	1,250	113
75ℓ	1,880	113	1,880	169

2. 특수종량제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u>2021. 1. 1. ~</u>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20ℓ	2,040	122	2,040	184
50ℓ	5,100	306	5,100	459